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전후 비교표

(원칙)2단계 + 일부 방역수칙 조정

2. 1.(월) 00시 ~ 2. 14.(일) 24:00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항목으로 구성된 표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구 분

① 모임·행사

사적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 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 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기타 모임·행사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일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실시(질병청 환기 지침 및 국토부 환기설비지침 등 참조)

유홍시설 5종(클럽 등 유홍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집합금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 노래·음식 제공 금지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 별도의 룸 구조 시설은 룸 별로 이용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한 인원만 수용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베이의 경우 공동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격리 유지

홀덤펍

- 집합금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 별도의 룸 구조 시설(스크린골프장 등)은 룸 별로 이용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한 인원만 수용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체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직업훈련기관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원칙적으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월80 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구 분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공연장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온라인·멀티방 등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설·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행 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트·상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 · 소독

편의점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포장마차
(음식조리·판매시설)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조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 (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시설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체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접근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체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텐딩공연장, 식당·카페)

행정명령과 위반시로 구성된 표

-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집합금지(공고2020-339,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9. 4.~별도 해제시까지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변경 고시(고시 제2020-440호, 재난대응과) : 2020.11.12
- 방문판매업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고시 제2021-31호,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2021.1.25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고시 제2021-37호, 사회재난과) : 2021.1.31

행정명령

위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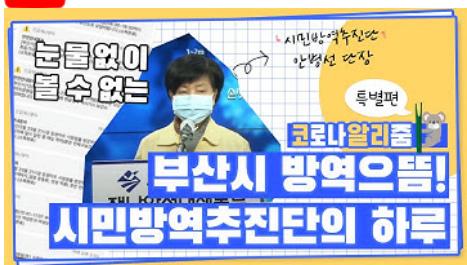
시설 관리·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처

구 분	기관명, 종별, 연락처, 주소로 구성된 표		
	소 속	담당자	연락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및 마스크 착용의무화 총괄 유홍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식당, 카페 목욕탕·사우나 이·미용업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영화관, DVD방 멀티방 콜라텍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상점·마트·백화점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결혼식장	부산광역시 시민방역추진단 보건위생과	석태진 김범현 김대영 윤진수 정희재 전연수 정희재 김동우 황국현 신현숙 조성란 이선희 이선희 체육진흥과 일자리창업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버스운영과 택시운수과 도시철도과 보건위생과 노인복지과 투자통상과 문화예술과	☎ 888-3334 ☎ 888-3372 ☎ 888-3395 ☎ 888-5161 ☎ 888-5155 ☎ 888-5141 ☎ 888-5155 ☎ 888-2957 ☎ 888-5041 ☎ 888-4757 ☎ 888-4954 ☎ 888-2004 ☎ 888-2004 ☎ 888-3455 ☎ 888-4385 ☎ 888-3275 ☎ 888-1604 ☎ 888-3962 ☎ 888-3999 ☎ 888-4082 ☎ 888-3422 ☎ 888-3382 ☎ 888-3274 ☎ 888-3276 ☎ 888-4446 ☎ 888-5072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콜센터 종교시설			



[마스크를 벗는 순간](#)



[\[코로나 뭐든 알리줌 10편\]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의 하루](#)





라바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실천해요!



[코로나 뭐든 알리줌 9편] 부산에도 임시선별검사소 생겼DAY~



[코로나 뭐든 알리줌 8편] 코로나19 확진자가 되면 생기는 일



[코로나 뭐든 알리줌 7회] 우리의 지구를 부탁해 똑똑한 슬기로운 집콕생활!



[코로나 뭐든 알리줌 6편] 부산 BMW 밟어도 되나??



[코로나 뭐든 알리줌 5편] 힘내세요 만덕씨



[코로나 뭐든 알리줌 4편] 역학조사관의 오해와 진실! 부산시 역학조사반은 어떤 일을 할까?



[코로나 뭐든 알리줌 3편] 뭐? 이거 벗으면 과태료 부과?! 마스크 의무화의 모든 것



[코로나 뭐든 알리줌 2편] 동선 숨기고 자가격리 거부? 구상권에 관한 모든 것



[\[코로나 뭐든 알리줌 1편\] 열나고 기침도 난다! 나도 혹시 독감? 코로나?](#)

Copyright © Bu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